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9. 7 선고 2022가단314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령시 D) 사이에 2021. 9. 30.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보령시 2021. 9. 30.자로 마친 채권액 150,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별지 어업에 관한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2019. 5. 1. 어업허가지위 승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어업허가지위 승계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2018. 3. 16.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단1971호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19나104219(본소), 2019나105441(반소) 사건에서 C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2020. 9. 25.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021. 4. 15. 위 확정된 판결의 주문에서 정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하였다.

(3) 이 사건 소장 제출 당시 C는 원고에게 98,134,246원의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1) C는 2019. 5. 29. 별지 목록 어업허가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0. 피고에게 위 어업에 관하여 어업허가지위를 승계를 마쳐 주었다.

(2) C는 2021. 9. 30.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절차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C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판결에서 정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줌으로서 C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판결금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어업허가지위 양도 행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어업허가 지위를 승계해준 것 자체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업허가 자체만 별개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어업허가지위를 이전해 준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저당권설정 행위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저당권설정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4.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가 아니며, 그 이전부터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는 이미 다른 저당권이 설정된 이외에도 수개의 압류 및 가압류가 마쳐진 상태였기에, 피고로서는 C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C와 금전거래를 계속하면서도 별다른 채권확보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의 추심이 드러난 상황에 이르러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목 록

선박의 명칭 : 어 선 번 호 :

선 적 항 : 보령시(효자도항)

선 체 재 질 : FRP

총 톤 수 : 6.52톤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 선박용디젤 기관 316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 수 년 월 일 : 1995. 3. 1.

소 유 자 : 보령시

목 록

어업의 종 류	허가번호	수면위치	어업허가 지위승계	
			지위승계 전	지위승계 후
장방류				
			(6.52톤)	(4.78톤)
장방류				
			(6.52톤)	(4.78톤)

